

2011년 전기용품 · 공산품 유통조사 계획

조사결과 불법 · 불량제품은 언론에 공표

- 금년부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소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불량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된다.
- 그동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매년 시중 판매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危害수준에 따라 인증취소와 개선조치 등을 하는 한편, 시중유통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조치를 해 왔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음
 - 앞으로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조치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불량제품 정보를 통보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에서는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2011년도 시판품조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연간 약 3천개 이상의 시중 판매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불량제품 상세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
 - 또한, 경결함 성격의 기준 위반이 발견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이 생산 ·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공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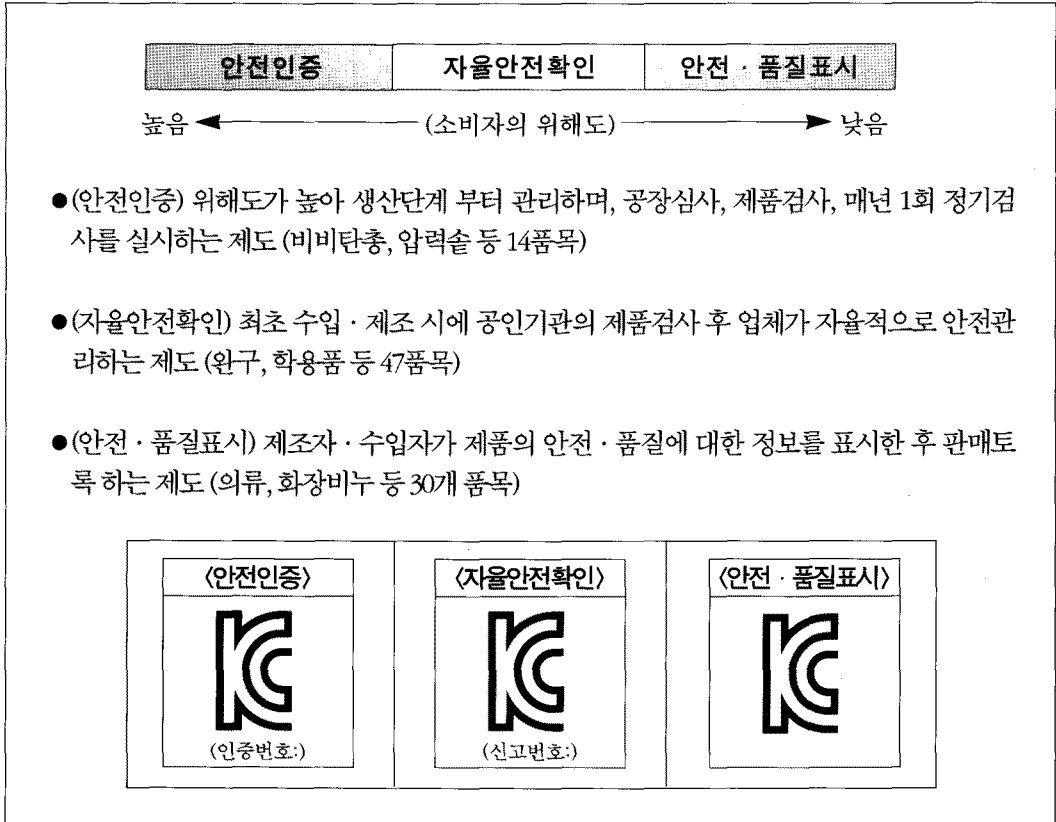
-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 (www.safetykorea.kr)에 신고하면, 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대상품목 국민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함

2011년도 시판품조사 대상품목

공산품	전기용품
자동차용정지표지판, 고령자용보행차보행기, 어린이용장신구, 고령자용보행자동차, 비비탄총, 휴대용사다리, 학용품(5), 유아용캐리어, 유모차, 생활화학가정용품(8), 유아용침대, 휴대용 예초기의 날, 완구, 유아용삼륜차, 가속눈썰, 이륜자전거, 워셔액,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키보드, 가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가정용 섬유제품, 쇼핑카트,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고령자용목욕의자, 디지털도어록	전격살충기, 전기냉온수기, 전기소독기,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등기구, 조명기구용컨버터, 전기맛사지기, 전기찜질기, 콘센트, 발욕조, 전선릴,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소형변압기, 전기담요, 전기스토브, 전기머리인두, 전기이발기, 전기라디에이터, 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핫플레이트,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후라이팬, 전기매트, 누전차단기, 전기스탠드, 전기방석, 모발건조기, 전기드릴, 직류전원장치, 주서믹서기, 전기온수기, 요구르트제조기, 아이스크림제조기, 전기약탕기, 전선, 전기청소기, 전기선풍기,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공기청정기, 전기토스트, 후드믹서, 전기보온밥솥, 전기냉장 · 냉동기기, 전기체인톱, 전기세탁기, 전기온풍기, 전기온수 매트, 배선용차단기, 램프홀더, 전기용접기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영현황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 · 품질표시 대상공산품으로 차등화 하여 관리
- 어린이보호포장제도
 -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쉽게 개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포장 및 용기로써, 대상품목은 광택제, 방향제, 세정제 등 7개 품목



■ 신속조치제도

- 신개발 제품 등 현행 법령에서 관리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신속조치제도」 운영
- * 제품의 안전위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에게 판매금지 조치를 권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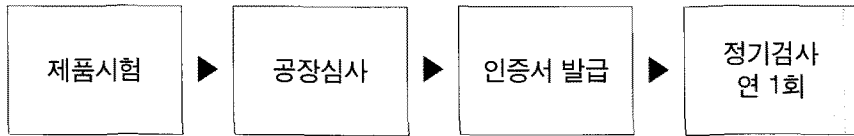
■ 전기용품(148종)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제도」 운영중

* 법적근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 2007.12.21일 전부개정)

- ① 주요 전기용품 148종 중 危曆수준이 높은 53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
 -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정기검사를 실시

* 안전인증을 받은 후 연 1회 정기검사(제품시험+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연속 2회 정기검사 합격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1회를 면제

〈안전인증절차(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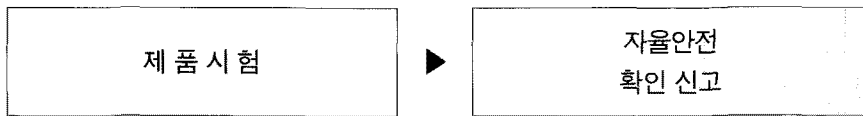


② 나머지 危害수준이 낮은 95종은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관리

-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만 판매를 허용

* 공장심사와 연 1회 정기검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자율안전확인 신고절차(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③ '12.1월 부터 저위험 제품 29종에 대해서는「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09.3.25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12.31 공포)

☎ 문의 :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조사과(509-7251)

